

#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⑨

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.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,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.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.

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 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.

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.

<p>글 쓰는 순서</p> <p>II.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</p> <p>1. 벌칙의 종류</p> <p>2.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칙</p> <p>3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</p> <p>4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</p> <p>5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</p>	<p>률상의 불이익 처분 ..... 지난 호</p> <p>6.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</p> <p>7. 각종 노무관련 법령상 벌칙 ..... 이번 호</p> <p>1) 산업재해보상법 · 고용보험법 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</p> <p>2) 근로기준법 ..... 다음 호</p> <p>3)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관련 사용자에 대한 벌칙</p>
--	---

## 7. 각종 노무관련 법령상 벌칙

### 1) 산업재해보상법, 고용보험법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#### ■ 산업재해보상법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①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면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법제36조 법제106조제1항  법제114조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/ul>
②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규정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바, 공단의 심사청구 심리절차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답변, 검사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li> <li>* 재심사 청구의 경우도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</li> </ul> </li> </ul>	법제89조제2항 법제92조제1항 법제106조제2항제2호  법제114조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0만원</li> </ul>
③ 보고의무 위반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주, 근로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의 필요한 보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</li> <li>■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진료의사가 공단에 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</li> <li>■ 위의 자가 공단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</li> </ul> </li> </ul>	법제99조제1항 법제102조 법제106조제2항제3호, 4호  영제114조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0만원</li> </ul>
④ 공단소속직원의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,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제101조 법제102조	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</li> </ul>	법제106조제2항제5호 영제114조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0만원</li> </ul>

### ■ 고용보험법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① 불이익 취급금지규정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경우</li> </ul>	법제14조 법제78조 법제85조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
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·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	법제85조제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</li> </ul>
③ 양벌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</li> </ul>	법제85조 법제87조	
④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</li> <li>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</li> <li>■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</li> </ul>	법제13조 법제86조제1항제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/ul>
⑤ 피보험자격 이직 확인신고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</li> <li>■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</li> <li>■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</li> </ul>	법제13조의2제1항 법제86조제1항제1호의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/ul>
⑥ 이직확인서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위반	법제13조의2제2항 법제86조제1항제1호의2	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■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■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경우</li> </ul> <p>⑦ 보고 등의 규정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,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 또는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문서를 제출한 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습적으로 보고·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·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</li> <li>- 고의로 보고·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·문서제출을 한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보고·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⑧ 이직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직한 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바, 이 청구에 위반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</li> <li>-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⑨ 피보험자, 수급사업자,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자의 보고 등의 의무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,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바,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,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</li> </ul>	<p>법제80조제1항 법제86조제1항제4호</p> <p>법제80조제2항 법제86조제1항제5호</p> <p>법제80조제3항 법제86조제2항제1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/ul>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습적으로 보고· 문서제출· 출석을 거부·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· 허위문서 제출을 한 경우</li> <li>- 고의로 보고· 문서제출· 출석을 거부· 기피하거나 허위보고· 허위문서 제출을 한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보고· 문서제출· 출석을 거부· 기피하는 경우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만원</li> </ul>
<p>⑩ 노동부 소속직원의 조사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노동부 소속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사업주 단체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바,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 방해 또는 기피한 관계인</li> <li>- 상습적으로 답변거부· 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· 방해· 기피하는 경우</li> <li>- 고의로 답변거부·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· 방해· 기피하는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· 방해· 기피하는 경우</li> <li>■ 피보험자,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</li> <li>- 상습적으로 답변거부· 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</li> <li>- 고의로 답변거부·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· 기피하는 경우</li> </ul>	<p>법제81조제1항 법제86조제2항제6호</p> <p>법제81조제1항 법제86조제2항제2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3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십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십만원</li> </ul>
<p>⑪ 고용보험심사관(심사위원회)의 심사 및 재심사 업무에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피보험자격의 취득· 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의 처분(원처분 등)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청구,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</li> </ul>	<p>법제74조 법제86조제3항</p>	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p>는 바,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</li> <li>- 그 밖에 답변·검사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백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50만원</li> </ul>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<p>① 보험관계신고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보험관계신고, 변경신고, 개산보험료신고, 확정보험료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한 자</li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</li> </ul>	<p>법제11조 법제12조 법제17조 법제19조 법제50조제1항제1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0만원</li> </ul>
<p>② 보고 및 관계서류제출사항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 및 관계서류를 사업주, 근로자,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요구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요구를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을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</li> <li>- 1회 위반시</li> <li>- 2회 위반시</li> <li>- 3회 위반시</li> </ul>	<p>법제44조 법제50조제1항제2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200만원</li> <li>• 과태료 300만원</li> </ul>
<p>③ 조사사항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사업장 또는 보험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바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li> <li>- 1회 위반시</li> </ul>	<p>법제45조제1항 법제50조제1항제3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태료 100만원</li> </ul>

위반내용	관련규정	처벌내용
- 2회 위반시 - 3회 위반시 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의무 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등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바,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- 1회 위반시 - 2회 위반시 - 3회 위반시	법제36조 법제50조제2항	• 과태료 200만원 • 과태료 300만원   • 과태료 10만원 • 과태료 30만원 • 과태료 50만원



### 작은 솔방울 아이 - 피노키오

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읽었을 명작 동화 「피노키오」. 이 동화는 이탈리아 작가 콜로디 (Carlo Collodi)가 1883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원래의 명칭은 「피노키오의 모험 (Le Aventure di Pinocchio)」이다.

이 작품 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장작을 깎아서 작은 나무인형을 하나 만들어 '피노키오'라고 이름을 붙여준다. 피노키오는 만들어 놓자마자 말썽 많은 장난꾸러기가 되는데, 마지막에는 고래에게 먹힌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출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.

이 동화는 매우 재미있고 교훈적인 동화다. 특히 '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'는 설정을 해서 이 동화를 읽는 아이들은 자꾸 자기 코를 만지게 된다. 거짓말하지 말자는 교훈을 재미있게 표현한 귀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.

그런데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왜 '피노키오'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. 여기에는 별난 의미가 담겨 있다.

피노키오 (pinocchio)에서 'pino'는 이탈리아 어 'pinolo'로 영어의 '파인 너트 (pine nut)'에 해당된다. 그러니까 소나무 열매, 즉 솔방울을 의미한다. 그리고 '키오 (cchio)'는 '작다, 귀엽다'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. 따라서 'pinocchio'는 '작은 솔방울 (little pine nut)'이라는 뜻이다. 말하자면 '별 쓸모없는 소나무 장작으로 만든 귀여운 아이'라고 할 수 있다.

이렇게 동화나 소설 속에는 작가가 직접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아주 독특한 이름들이 등장한다. 한 예로 '신데렐라'는 '재투성이 소녀'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.

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, 어린 시절이 그리워질 때면 작은 솔방울 아이 피노키오가 생각난다.

「상식지존 뇌를 깨워라」 중에서